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!
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자유한국당 중구 2선거구의 이혜경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현행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은 교통약자를 “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 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는 서울특별시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할 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의 대상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, 상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.

□ 반면 「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, 「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등의 경우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대상을 교통약자 전체로 명시하고 있으며, 경기도는 교통약자에 관

한 주요정책과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등을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

- 이에 본 개정안은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대상을 ‘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’에서 ‘교통약자’로 확대하고,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심의 기구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또한 본 개정안은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 보호 및 배려를 위한 안내방송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양보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